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132329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김종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3. 9.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22. 6.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475,1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75,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C은 2016. 3. 17. 주식회사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연 25.9%, 연체이자 연 27.9%, 변제기 2021. 3. 17.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1. 20. 주식회사 D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7. 7. 31.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583224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2,713,181원 및 그 중 9,999,906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2022. 8. 3. 현재를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27,037,593원 및 그 중 9,999,906원에 대하여 2022.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은 2021. 6. 17. 사망한 부(父)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고, F, G, H, I, J(이상 모두 각 1/8 지분) 등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1998.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7.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속재산인데, 망인이 2021. 6. 17.

사망하자, C 등 공동상속인들은 2022. 6. 2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망인이 사망한 ‘2021. 6.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 직후 같은 날 2022. 6. 28. 채권최고액 14,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K조합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198,810원이었다.

4) 그 후 피고는 2022. 7. 14. 이 사건 부동산을 L에게 매매대금 53,000,000원에 매도한 후 2022.

7. 15.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22. 6. 28.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비롯하여 M은행, N카드, O,

P, Q, R, S,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각종 대출금으로 원금 합계 111,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8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T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U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으로서 12,713,181원

및 그 중 9,999,906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갖고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8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망인을 평소 모시고 살아온 기여분을 인정하여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피고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의 형제로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인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8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및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경우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이 사건과 같이 수익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면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이 일치한다)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 후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취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53,000,000원(피고가 L에게 매도한 매매대금이다)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1,198,81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801,190원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475,148원(=51,801,190원×1/8,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7,037,593원(2022. 8. 3. 기준) 중 더 적은 금액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위 6,475,1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475,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별지****부동산 목록****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익산시 V에 있는 W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X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내지 3층 각 413.2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북도 익산시 V 대 3,03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Y호 철근콘크리트조 63.4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2분의 1 끝.

